

농어업 경쟁력 강화·농어민 복지 향상

중장기 종합처방 「농어촌발전대책」 확정

전업농 15만호 육성, 농어민연금제 내년하반기 시행

「제1차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회의」가 金泳三 대통령 주재로 6월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과 민자당대표, 시·도지사,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 선도농어민과 농민단체 대표 등 176명이 참석했다.

崔仁基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어촌발전과 농정 개혁방안」에 대해 종합보고한데 이어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장관이 각각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민 복지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가 끝난뒤 金대통령은 「오늘회의는 WTO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 개혁방안」을 확정짓고 농정개혁 추진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말하고 이날 보고된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계속 보완·발전시키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金대통령은 농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이 쇠퇴하는 사양산업이라는 패배주의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발전적 가치관을 가져줄 것과 농림수산업·농어촌·농어민을 포함하는 새로운 「농정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농어촌발전대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경쟁력 강화

오는 2004년까지 쌀·과수·축산 등 분야별로 15

만가구의 전업농(벼농사 5ha, 한우 1백두 규모)을 육성한다. 5개의 농수산전문기술대학과 도별로 1~2개의 자영농수산고교를 설립, 졸업후에 농어민후계자로 우선 지정하고 병역특혜를 준다. 2004년까지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 20만명을 직업훈련시켜 3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非농민이 부분출자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집중 육성, 중소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98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청과물 종합처리장 24개, 산지종합포장센타 35개, 산지집하장 4천개를 2004년까지 설치한다.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업 참여제한을 완화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품목제조허가제를 폐지하며 주류제조면허 요건을 완화, 2004년까지 2천개의 산지 가공공장을 육성한다.

2004년까지 4백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 쌀농사를 생산·도정·판매를 연결하는 생산·유통전문산업으로 육성한다. 2000년까지 10개의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생산자단체와 유통·식품회사의 자본참여를 허용한다. 2004년까지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대도시 중심의 물류센타 20개를 설치한다. 농수축협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한다. 시설채소·화훼·과실·양돈 등 60개의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한다.

규제완화·부담경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10년내에 1조원으로 늘려 보증한도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1억~2억원으로 상향조정, 정책자금 보증

률을 98년이후 40%로 상향조정한다. 신용보증 대상을 농어민에서 가공·유통업자까지 확대한다. 非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계를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편입, 수세를 a당 벼 5kg으로 경감하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축사 건축규모를 현행 60평에서 1백20평으로 확대한다.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연간 2백89억원의 축산농가 추가비용을 경감한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원료 수입관세율을 3~5%에서 1%로 인하하고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전액(연간 2천5백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농어촌주택 소유자에 대한 1가구2주택 청약제한을 폐지하고 난시청지역 주민과 영세농가의 TV시 청료 면제를 확대한다. 상속·이동, 영농목적의 귀향농민에게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 도시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어민 복지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농어촌출신 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허용한다. 농어촌소재 고교를 공립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농어촌 근무교사를 인사상 우대하며 농어촌 고교의 학비감면액을 현재 전체 학비의 15%에서 96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를 직장·지역조합간에 공동부담하고, 都農통합형 지역에 중심병원을 육성, 대학병원과의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도 직장 근로자와 같이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95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어민연금제도는 최저 각출료의 3분의 1(2천2백원)을 국고에서 정액 지원하고, 각출료는 표준소득금액의 3%부터 시작

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연금가입연령을 65세이상으로 확대한다.

농지제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10~20ha)을 없애고 농지매입시 20km통작거리제한과 6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진흥지역밖 농지는 영농목적상 필요한 경우 5ha까지 소유할 수 있다.

앞으로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않는 1ha이상 농지는 의무적으로 처분토록하되, 임의처분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토록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매매증명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한다.

산업진흥

농공단지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시·군별 개발 연면적을 30만평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2·3차산업 유치를 위해 농지·산지규제를 대폭 완화, 진흥지역밖 농지와 준보전임지는 오염시설의 모든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개발여건이 좋은 소도읍 주변을 「농어촌산업지역」으로 지정, 농지전용을 자유히한다.

농정체계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한다. 2001년까지 현재 1천3백59개인 단위조합을 5백여개로 통폐합한다. 농정지원체계를 썰-보리 생산 위주에서 유통·가공 분야 위주로 전환하고 품질인증, 규격화·상품화 등의 정책기능을 보강한다. 품목별 전문조합의 설립제약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발전특별세 재원은 별도 관리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생활 향상에 집중지원하고 42조원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한다. **농악정보**